

의안번호	2211592
의 퇴 인	조인철의원
회 답 일	2025. 8. 25.
추계번호	25B394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3항) <신 설> 4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2	안 제18조의2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디지털역량지원센터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제2항) 1. 침해사고 발생사실 및 대응 방법·절차 등 관련 정보의 디지털취약계층 맞춤형 고지·안내 및 상담 2.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고·접수와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제공기관 연계 3.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조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미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6년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확정 한 후 2027년 '제1차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따라 디지털포용 기본 계획의 포함 사항에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 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더라도 현재 편성 예정인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하다는 의견임
2	안 제18조의2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안 마련 등(안 제18조의2 신설)
-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침해사고¹⁾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²⁾이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역량센터, 디지털 역량지원센터³⁾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침해사고 대응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담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취약계층의 범위 및 규모,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등에 필요한 지원 방안의 내용, 전담기관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식·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디지털취약계층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관련 통계가 부재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방안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격차 해소 및 디지털역량강화 등을 위한 사업을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음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2)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3) 제15조(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원과 제14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교육에 관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디지털역량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및 제3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지원센터의 지정, 운영·관리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1]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2025년)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지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보급지원	7,100 (국비) 3,830 (지방비) 3,270
	정보접근성 제고	웹·앱·키오스크에 대한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해 법·제도 정비, 실태조사, 접근성 개선 기술 개발·지원	1,861(국비)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	디지털 역량함양 지원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없이 AI·디지털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한 AI·디지털 보편교육 추진	39,225 (국비) 38,665 (지방비) 560
ICT융합디지털포용 기술개발(R&D)		고령자·장애인 등의 사회·경제 참여가 가능하도록 ICT융합 기반 디지털 포용기술·서비스 개발지원	3,600(국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